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4. 4. 24.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4월 24일(수) 14:00~17:17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원장

*의결 제75호

이　윤　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4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4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75호 『**㈜골든오크인베스트먼트의 ㈜골든오크벤처스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76호『**KDB생명보험㈜ 등 2개사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7호『**이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이것이 안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OEM펀드 양정기준에 따라서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중대'로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안건에는 쓰여 있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때 그렇게 기준을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다만,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OEM펀드가 판매사나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것에 대해 집합투자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만을 제재하다가 법개정을 해서 판매사의 경우,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제재하는 것으로 들어왔지 않은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러면 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자가 투자업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조치(action)도 취하지 않는데 사실 투자자 쪽에서 그런 요구(needs)가 계속, 펀딩(funding)이나 딜소싱(Deal Sourcing)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유혹이 계속 있을 텐데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위험성(risk)이 없는 것이어서, 정식 제재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위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든 뭐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하나금융투자㈜임. 이분들도 일종의 자산운용행위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적어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자를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식적인 제재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자산운용과정에서의 문제되는 위규행위를 유인한 행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실 OEM펀드로 활용되는 수단(vehicle)들은 영세 운용사인 경우가 많고 자금력이 있거나 괜찮은 딜(deal)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면이 있어서, 투자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금융회사라면 금융회사 자산운용 과정에서 일종의 불법적인 자산운용을 한 행위인 것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림.

- (보고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사모펀드 사태로

유권해석을 통해 딜소싱(Deal Sourcing) 자체도 OEM펀드의 요청이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시장에서 불확실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전에 나왔던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유권해석이나 지금 제재사례를 통해서 시장에 충분히 인지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음.

○ (위원) 알겠음.

○ (위원) 이것은 2021년 12월10일에 이미 검사가 종료되었음. 그리고 제재심 심의도 2022년 6월9일에 완료가 되었는데, 제재심 완료 후 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

- (보고자) 저희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 건이 아무래도 작은 사모운용사 조치 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 중에 중요한 안건들 위주로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건이 약간 지체(delay)되었음.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실시 완료를 검사실시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제재처리가 약간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음.

○ (위원) 그런데 수용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참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조치가 되는 것은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음.

- (보고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위원) 알겠음.

○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의 경우에는 증선위 양정기준이 정해지기 전이었다면 1,200만 원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음.

- (보고자) 그런데 증선위 양정이 마련된 것은 2022년 7월13일이었고 이때 제재심이 6월9일이었으니까, 사실 좀 판단이 늦어졌음.

○ (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음.

○ (위원장) 제77호 안건은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중대'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위원님 제기하신 제도보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78호『㈜**엠디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금전대여로 운용을 할 때 다른 담보물과 함께 차주의 주권 실물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그 대출계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인지?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신탁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당연히 달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지?

- (보고자) 명시는 되어 있었는데, 보통 법무법인을 통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이 건은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처리하다보니까 뒤에 붙어있던 주권 실물을 깜빡 놓쳤다고 함.

○ (위원) 신탁업자 입장에서 운용사가 운용지시한 대로 실제 거래에 수반하는 행위를 해야 함. 그리고 계약대로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check)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약서에 담보물로 잡게 되어 있는 주권이 있는데 신탁업자가 “왜 그것 안 가져와요?”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러니까 계약서에 없는 것을 추가로 받아서 들고 있었다고 하면 신탁업자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절차(process)가 있는 것이 약간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임.

- (보고자) 이것을 신탁업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펀드에 대한 대출약정서, 부속서류 원본 등을 이 건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고 함. 신탁업자도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임.

○ (위원) 안건 자체에는 이견 없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라

고 자산분리를 시켜놓고 신탁업자를 두는 것인데, 신탁업자 입장에서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행위와 관련된 것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screen)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서 여쭤봤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9호『**라이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 회사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법 개정시행 직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0호『**㈜오리엔트전자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감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확인한 것인지? 그리고 회장과 부회장에게 기존에 미계상한 퇴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확인받으신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감사인 입장에서는 합의서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해서 다른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회사가 만족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된 것인지?

- (보고자) 회사 쪽에서는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얘기를 했고 감사인 입장에서는 합의서가 있다는 내용은 전달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는지 그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감사절차를 종료하게 되었음.

○ (위원) 감사인은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하게 회사 측에 요청을 한 것인지?

- (보고자) 맞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위원) 정황을 살펴보면 회사는 기존의 회계처리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리고 또 감사인에게 기존의 회계처리를 유지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면 수용하

겠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보임. 이런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해 보면 회사는 오히려 퇴직급여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기존의 회계처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 (보고자) 제가 만약 감사를 진행했다면 합의서만 나왔으면 뭐라고 얘기를 못했을 것 같음.

○ (위원장) 동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진술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음.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014년 당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당사 임직원의 요청을 수용하여 핵심 경영진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회사는 합의서대로 퇴직급여를 계상하지 않았음. 현재까지 당사 핵심경영진은 퇴직금을 수령한 바 없고, 향후 수령할 계획도 없음. 그러나 2020년 지정감사인은 감사제출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소급 인식을 강권하였고 회사는 수정권고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였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정감사인이 강권하여 수정분개한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중과실' 지적을 하였음. 당사의 위법동기 판단근거로 첫 번째 합의서를 지정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음. 위반동기 중 회사가 합의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서는 감사인의 주장임. 지정감사인이 작성한「2020년 중간감사 검토 결과 보고」는 단순 합의서 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추가정보를 제출하라고 하였음. 그 때문에 당사는 합의서 외에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추가 소명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지정감사인에게 제출하였음. 그런데 감사인이 모두 거절했음. 두 번째는 사실관계로서 회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는지 여부임. 회사는 합의서에 의해 퇴직급여 미계상하는 것이 법률상, 회계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회사 답변서를 통해 밝혔으나 감사인은 소급계상한 수정분개를 강권한 결과 당사 및 모회사의 감사의견 변형 및 상장사 상장폐지를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어쩔 수 없이 수용했을 뿐임. 그런데 금감원은 이를 두고 회사가 핵심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증가를 위해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감원이 지적한 위반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지정감사인이 수정권고한 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당사에게만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것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당사의 성실한 외부감사 수검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반하기 어려운 지정감사인의 강권에 의한 것이었을 뿐, 당사의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보기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임.

○ (위원) 회사의 입장은 감사인이 합의서는 필요 없고 추가증

거를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그래서 추가증거로 회사가 주장하고 계신 의견서 이것을 감사인한테 제출을 하셨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미계상 하는 것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다른 회사에서도 하셨는지?

▶ (진술인) 다른 회사는 안 했음. 회사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싶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니까 제가 퇴직금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 하고, 저는 전혀 다른 의도가 없었음.

○ (위원) 2020년 12월31일자 새로운 확약서를 제출한 이유가 회사 주장에 따르면 합의서만으로는 안 되니 좀 더 법적구속력이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증을 받으려고 했으나, 원래 작성된 문서는 작성시점이 오래되어서 공증사무실에서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증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안 된다고 하니 공증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 해서 공증을 받아주면 되느냐는 쪽에 방점이 있었다는 주장이신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장) 정리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지정감사인이 과거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출을 하신 것

인지? 안 하신 것인지?

▶ (진술인) 단 한 번도 요구가 없었음. 그리고 대표이사 면담요청도 없었음.

○ (위원장)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어도 회사는 이런 합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계상 안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당연히 이것을 제시해야 함.

▶ (진술인)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쭉 그냥 왔기 때문에 저희들 퇴직금 처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었지, 합의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음. 그리고 합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 3년 정도 지나서 2023년 3월20일 되어서 그때 합의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전에는 합의서라는 내용을 가지고는 다툼이 없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위원) 이 사안은 지금 소급해서 수정하느냐 수정하지 않느냐는 이슈(issue)가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3월20일에 회사에 보면 문서(letter)에 따르면 확인서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처럼 보임.

○ (위원) 이렇게 회사와 감사인 간에 핵심쟁점에 대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이면 당연히 그 당시 감사할 때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 요청자료 안에 확인서가 있으면 감사인이 확인서를 요청한 것이고 없으면 요청하지 않은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회사가 2020년 3월18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감사인에게 기존의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진술인) 저희도 아마 그날 회신서를 작성해서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9일에 수정된 퇴직부채 금액을 회사가 보냈음. 그래서 그것은 종결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임.

○ (위원) 합의서 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지?

▶ (진술인) 최초에 중간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합의서를 달라고 했는데 합의서 제출이 계속 늦어졌음. 그래서 회사가 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보려면 당사자들 면담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이 입증감사 2월까지 계속 끌고 간 것이고 그때부터 이슈(issue)가 되기 시작한 것임. 저희가 추가적인 증빙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음.

○ (위원) 감사인측 담당이사께서 판단하실 때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회계처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었는지?

▶ (진술인) 맞음. 그런데 저희는 적합한 감사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견변형을 고려했으나 3월19일에 수정된 퇴직부채 금액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된 상태였음.

○ (위원) 요청하신 자료, 그리고 회수되지 않은 자료, 말씀하시는 전임감사인에게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해서 합의서나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이 있는지?

▶ (진술인) 전임감사인에게 요청한 것은 없었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위원 얘기하신 감사보고서 첨부에 있는 요청자료 목록(list) 확인을, 감사인과 얘기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보고자) 확인해 보겠음.

○ (위원) 회사 쪽에도 한번 확인 바람.

○ (위원장) 추가 사실확인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음.

(16시27분 정회)
(16시42분 속개)

○ (위원장) 요정자료 목록 확인이 되었는지?

- (보고자) 자료상으로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해서 확인서를 요구했다는 확인서 요청 문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위원장) 그러면 감사인이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보고자) 맞음.

○ (위원) 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음. 이점은 감사인도 인정을 하고 있음. 감사인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중요한 자료인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실'로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음.

○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저도 '과실'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임.

○ (위원장) 그러면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부분은 회사 측도 2014년 합의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감사인도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했다는 근거가 빈약하고, 또 2014년 합의서 이상의 어떤 법적효력을 가진 자료를 요청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과실'보다는 '과실'로 양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81호『㈜OOOO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9호『**ATS 운영방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위원) 스톱지정가호가는 직관적으로 확 와 닿는데, 중간가 호가는 거래소도 규정을 바꾼다고 한 것으로 봐서 거래소도 바로 따라서 하려는 것 같음. 거래소의 매도·매수 호가가 있고 ATS 매도·매수 호가가 있는데 이 중간가 선정과정에서 서로 혼선이 있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산과 시장감시가 대체거래소가 나와서 이 기능을 거래소가 하게 되고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을 텐데, 거래소 수수료나 전산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놓았음. 그래서 청산수수료나 시장감시와 관련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장효율화

위원회가 이것을 같이 관장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림.

○ (위원장) 알겠음. ATS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ATS가 잘 작동(working)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조정을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님들,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는 이슈(issue)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음.

○ (위원) 저는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상상이 됨. 보내주신 안건을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가격제한 부분, 당연히 거래소 전날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날 위아래로 30%로 되어 있음. 그런데 ATS가 들어오면 거래소가 종료된 다음에 몇 시간을 더 함. 그런데 그 다음날 거래기준폭은 거래소의 종가기준임.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끝나고 ATS에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다시 다음날은 가격제한폭이 올라간 것보다 조금 밑에서 위아래로 30%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세부(detail)적인 것이 몇 가지 있다는 생각이 듦.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거래소는 선별적으로 시장조성자가 있는데, 그러면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주식에 대해서 시장조성 역할을 ATS에서도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궁금했음.

○ (위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아마 해외에 있는 대체거래소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벤치마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check)해 보도록 하겠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만장일치로 원안접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82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 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3호『**㈜에이루트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4호『**OOOO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5호『**KB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6호『**키움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원안에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환헤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한투자증권㈜은 원금과 배당을 다 헤지(hedge)하기를 원했을 것인데, 실제로 구조는 원금만 환헤지되는 구조지 않은지? 다른 정황을 봤을 때 큰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을 쪼개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두 회사가 모두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전혀 주선인의 역할에 이견은 없음. 그런데 환헤지 구조변경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음. 다른 의견

은 없음.

- (보고자) 키움증권㈜에서 원금 플러스 배당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했었음. 다만, 본 건에서 보시는 사안은 이전 사례와 달리 고정수익구조 상품이 아닌 차이점이 있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익구조 자체가 Fixed income 내지는 Fixed 우선수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는 반면에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실적배당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그렇다 보니까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상품 자체 환위험을 헤지할 때 6%, 7%라고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과거 실적(track record)에 따른 기대수익률로 헤지하게 되면, 만약 그것에 못 미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받는 수익에 비해서 환헤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신한투자증권㈜에서 감수해야 되는 비용(cost)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없는 원금부분만 환헤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